

전주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0나116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3185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0나1164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6가소4825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강

변론 종결2022. 3. 23.

판결 선고2022. 4. 13.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6가소4825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160,840원과 그 중 12,958,48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1.부터 2022.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02,360원에 대하여는 2021. 5. 5.부터 2022.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32,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1. 11. 18:16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F아파트 방향에서 G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차로에서 좌회전하던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의 동승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5. 13. I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보존적 요법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고, 2013. 11.

12.부터 2017. 2.경까지 I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1. 3.부터 2017. 2. 13.까지 피고 및 해당기관에 위 치료비 및 가지급금(이하 통틀어 '치료비 등'이라 한다)으로 합계 13,332,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각 속력과 파손부위 및 파손정도, 피고의 상해부위와 병명 및 관련 기왕증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등 합계 13,332,79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최종지급일인 2016. 9. 22.부터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2.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26일간, 2008. 10. 13.경 기타 경추간판전위로 1일간 각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갑 제8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왕증 치료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목뼈 및 어깨관절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차량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차량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차량의 범퍼 또한 도색이 아닌 교환을 하여야 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에 탑승한 피고에게도 위 흔들림에 상응하는 정도의 충격이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뒤에서 추돌당하는 경우 사고 발생을 미리 예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기치 못한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므로, 그 충격이나 흔들림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특히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이나 어깨 부위에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I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보존적 요법 등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수상일로부터 2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3. 11. 12.부터 같은 달 30.까지 기간 중 9회 및 2013. 12. 2.부터 같은 달 10.까지 기간 중 5회에 걸쳐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가, 이후 2014. 2. 11.까지 약 3개월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데다 범퍼가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목뼈와 어깨부위의 염좌와 긴장'은 적절한 보존적 치료 및 시일의 경과에 따라 치유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특별한 외부적 충격 외에도 평소 생활습관과 자세 등 일상생활 중의 여러 요인에 의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2017. 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 외에 이 사건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장기간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다른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는 위 진단서상 치료기간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3. 11. 12.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기간 중 14회에 걸쳐 1병원에서 받은 통원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2013. 11. 12.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치료비로 I병원에 171,950원(= 133,970원 + 37,9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등 중 위 171,950원을 제외²⁾ 한 나머지 13,160,840원(= 13,332,790원 - 171,95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160,840원과 그 중 12,958,4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21.부터3)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02,36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21.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1.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박미리

판사김범준

판사신태광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2016. 9. 22. 이후 추가로 지급한 치료비 등의 반환을 구하면서도,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는 종전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상해와 같은 부위의 기왕증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치료를 마친 때로부터 이미 5년 이상 지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장소,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차량을 운전한 C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는 하지 않는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청구한 202,3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같다.